

# 2023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공고

## 1. 사업목적

- 지역에서 활동 중인 창작자에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 기여
-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 및 지역예산으로 운영되는 영화관련 단체와의 예산매칭을 통하여 지역 영상생태계 육성 기반 확대
-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영상문화·산업 균형발전 도모

## 2. 사업개요

### 가. 사업개요

-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지원금 : 341,000,000원(3억 4천 1백)
- 사업기간 : 2023.04 ~ 2023.12
- 기획개발 : 장편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한 트리트먼트 및 시나리오 개발비 편당 최대 1,000만원 지원
- 제작지원 : 제작 및 후반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장편 편당 최대 7,000만원, 단편 편당 최대 700만원 지원

### 나. 신청자격

-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지역
  - 지역 기관(단체)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순제작비 10억미만 작품
  - 지역기관(단체) 및 지원금 자격요건
    - ① 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> 제28의4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 영상위원회 중, 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(예산 및 사업집행력)을 갖춘 곳. 단, 기초단체 단위로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어있는 경우, 소속 광역 지자체 전체를 포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
    - ② 영상위원회 외 지자체 산하기관 및 영화관련 단체 중 지역예산으로 운영되는 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(예산 및 사업집행력)을 갖춘 곳
- ※ 지역에서 지원금을 매칭하는 자금의 출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한 공적자금 및 지역 내에서 지원받는 공익적 성격의 지원금을 포함. 단, 투자 및 개인적 지원(자체조달, 자부담) 및 국고보조금 포함시 불인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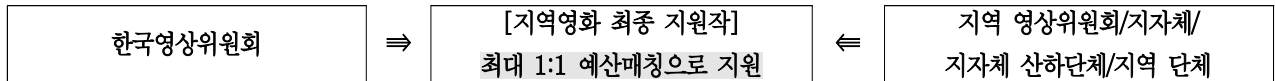
### 다. 사업주체 역할 및 연계 추진방안

- 사업주체 역할
  - ① 한국영상위원회
    - 사업총괄 집행 및 정산 : 사업예산의 총괄 집행 및 정산, 선정작품에 대한 지원금 지급
    - 지원작 최종선정 : 지역영화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지원 타당성 여부 검토, 지원결정
    - 홍보 및 지원작에 대한 모니터링, 리스크 관리

② 지역 영상위원회/지자체 산하단체/지역 영화관련 단체

- 지원사업 진행 : 사업참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역기반 작품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
- 지원작 1차 작품선정 : 지원 대상 작품선정을 위한 제반절차(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) 진행. 1차 선정 후 한국영상위원회에 최종선정을 위한 심의 요청
- 지역 홍보 및 지원작에 대한 모니터링, 리스크 관리 협조

■ 사업연계 추진방안



단계	개요	내용	담당
1단계	사업방향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기준, 절차 등 설계</li> <li>심사위원회 구성안 작업 진행</li> </ul>	한국영상위
2단계	사업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협·단체 대상 홍보 진행</li> </ul>	한국영상위
3단계	지원작 공모 및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별 지역영화 지원작 공모 및 접수(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 단체)</li> </ul>	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 단체
4단계	지원작 최종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별 지역영화 선정작 한국영상위원회에 접수</li> <li>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지원 작품 선정(매칭지원금 결정)</li> </ul>	한국영상위 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 단체
5단계	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종 선정작에 대한 참여 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단체의 1차 지원금 지급 또는 선정사실 확인</li> <li>1차 지원금 지급 및 선정사실 확인 후 매칭 지원금 지급</li> </ul>	한국영상위 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 단체
6단계	지원작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작들의 제작 진행 모니터링 및 중간보고</li> <li>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작 지원금 집행현황 관리</li> </ul>	한국영상위
7단계	제작완료 및 결과보고(지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작 제작 완료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완료</li> <li>지원금 집행에 대한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</li> </ul>	지원작
8단계	최종정산 및 결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종결과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제출</li> </ul>	한국영상위 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 단체

라. 접수안내

- 접수기간 : 2023.05.10.(수) ~ 2023.05.31.(수) 14시 59분
  - ※ 14시 59분까지 접수가능하며 15시 정각에는 접수 불가능함
  - ※ 접수마감일 다수 인원 접속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접수할 것을 권장함.
- 최종 지원작 선정 발표일 : 2023.06월 예정 (※ 6월 내, 선정자 대상(필참) 사업설명 및 협약 진행 예정)
- 접수방법 : 한국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지원신청 페이지 온라인 접수(www.kfcin.or.kr)
- 세부 제출 신청서류 : 사업공고 4페이지 참고(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마. 접수 시 유의사항

- 1인(사) 당, 모든 지원 부문에 총 1작품만 접수가능(※ 동일한 신청자(사)에 의해 2개이상 접수시 접수작품 전체 제외)
- 첨부서류 온라인 제출 시, 각 파일은 최대 5MB까지 첨부가능하며 PDF만 업로드 가능함
  - 파일명 : [작품명] 첨부서류명 (예. [기생충] 예산내역서 / [매칭기관명] 예산매칭 신청서 및 협약서)
  - PDF 변환 시, 1페이지에 2쪽 변환 금지하며 변환한 파일 확인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사업 추진 세부내용

#### □ 지역영화 지원조건

가. 공통사항 : 서울지역을 제외한 **지역창작자이며, 지역기관 및 단체 예산지원이 결정된 작품**

- **지역 내 창작자** : 지역거주자 또는 거주지와 활동지가 다른 경우, 지역 내 활동내역서(양식) 작성 후 제출(지역 소재 학교/기관/사업장 재학증명서, 경력증명서, 활동증명서(정기강연, 레지던스 사업참여 등), 회원등록증 등 양식 파일에 사진 첨부 및 지역 상주기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)
- **지역기관 및 단체 예산지원이 결정된 작품** : 당해 연도 또는 작년도 본 사업 접수 마감 시점(22년 6월 28일) 이후 지역기관 및 단체의 예산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작품 대상 지원가능
  - ※ 동 작품으로 상영(영화제, 극장 등) 및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하며, 지역기관 및 단체에서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작품에 한함.

#### 나. 기획개발 신청자격 - 장편 영화(극/다큐)

- |   |
|---|
| ① <b>일반부문</b> : 장편 영화를 기획 중인 자(감독 또는 작가)가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※ 동 지역 내 중복 선정 불가, 최대 1작품만 선정 가능(지역기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위)</li></ul> |
| ② <b>지역 소재</b> : 선택사항으로 소재(배경) 포함할 경우 심사평가 시, 전체배점 중 20%범위 내에 가산점 부여  |

#### 다. 제작지원 신청자격 - 장편 영화(극/다큐)

- |   |
|---|
| ① <b>일반부문</b> : 장편 영화(60분 이상)를 기획 중인 자(감독 또는 제작자)가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※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장편영화 대상</li><li>※ 동 지역 내 중복 선정 불가, 최대 1작품만 선정 가능(지역기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위)</li></ul> |
| ② <b>지역 소재</b> : 선택사항으로 소재(배경) 및 지역촬영을 포함할 경우 심사평가 시, 전체배점 중 20%범위 내에 가산점 부여  |

#### 라. 제작지원 신청자격 - 단편 영화(극/다큐)

- |   |
|---|
| ① <b>일반부문</b> : 단편 영화(60분 미만)를 기획 중인 자(감독 또는 제작자)가 신청   |
| ② <b>지역 소재</b> : 선택사항으로 소재(배경) 및 지역촬영을 포함할 경우 심사평가 시, 전체배점 중 20%범위 내에 가산점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※ 동 지역 내 최대 2작품 까지 선정 가능(지역기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위)</li></ul> |

#### □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및 평가기준(안)

- **작품선정 심사 계획**
  - 심사위원회 구성 : 영화 및 지역 문화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국영상위원회 자체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제작지원 단편 3인,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 3인으로 구성
  - 심사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작품선정
  - 한국영상위원회는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
- **지역영화 선정 평가기준(안)**
  - 동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작품의 완성도 및 제작가능성 등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하여,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
  - 기획개발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지역 내 활동경력, 제작 및 활용 계획 및 제출된 기획안의 완성도, 제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

- 제작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지역 내 활동경력, 촬영계획 및 제출서류준비의 성실성(제작의 준비도), 시나리오(구성안)의 창의성 및 독창성 등 작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
- 상황에 따라, 지역영화 선정 평가기준 관련 추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대상 자문 진행 예정

□ 세부 제출 신청서류

- 제출방법 : 한국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지원신청 페이지 온라인 접수([www.kfcin.or.kr](http://www.kfcin.or.kr))
- ※ 위원회 접수서류(양식)는 사업 공지사항 또는 신청서작성 진행시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- ※ 예산매칭기관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취 후 온라인 접수 시, 직접 제출함
- ※ 신청서에는 본명 기입이 원칙이며, 제출서류에 필히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함(활동명 및 필명은 별도작성)
- ※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자는 온라인 접수 후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→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온라인 업로드 제출 불가 / 담당자 [jenny@kfcin.or.kr](mailto:jenny@kfcin.or.kr)
- 주민등록초본 : 과거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이상 포함하여 발급(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수)
- 활동증명서(비거주자) : 지역거주자 또는 거주지와 활동지가 다른 경우, 지역 내 활동내역서(양식) 작성 후 제출 (지역소재 학교/기관/사업장 재학증명서, 경력증명서, 활동증명서(정기강연, 레지던스 사업참여 등), 회원등록증 등 양식 파일에 사진 첨부 및 지역 상주기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.)

공통 제출 서류		제출처											
지역 내 창작자	- 거주자의 경우 : 주민등록초본 제출(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불가) ※ 사업자 신청의 경우 : 사업자등록증 제출	사업담당자 이메일 발송											
예산매칭 기관	- 예산매칭 기관 사업자등록증 제출 ※ 해당자료는 신청자가 예산매칭기관에서 수취 후, 직접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발송												
	- 기관작성용 예산매칭 신청서 및 예산매칭 요약서(소정양식) ※ 해당자료는 예산매칭기관에서 작성후,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신청자가 접수	홈페이지 온라인접수											
지원부문별 제출 서류													
기획개발	1. 예산매칭기관의 예산지원을 증빙하는 서류(약정서, 협약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)												
	2. [극영화] 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/ [다큐] 기획구성안,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, 세부일정(자유양식)												
	3. 기획개발 계획서(소정양식)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①</td> <td>창작자 이력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</td> <td>④</td> <td>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>참여구성원 리스트</td> <td>⑤</td> <td>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>예산내역서</td> <td>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	①	창작자 이력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	④	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	②	참여구성원 리스트	⑤	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	③	예산내역서		-
①	창작자 이력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	④	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										
②	참여구성원 리스트	⑤	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										
③	예산내역서		-										
제작지원	1. 예산매칭기관의 예산지원을 증빙하는 서류(약정서, 협약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)												
	2. [극영화] 시나리오 / [다큐] 기획구성안,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, 세부일정(자유양식)												
	3. 포트폴리오 1편(유튜브, 비메오, 구글 링크 제출/신청인이 포함된 작품이어야 하며, 뮤직비디오 및 동영상 제출 불인정) → 선택사항으로 필수 아님												
	4. 제작계획서(소정양식)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①</td> <td>창작자 이력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</td> <td>④</td> <td>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>참여구성원 리스트</td> <td>⑤</td> <td>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>예산내역서</td> <td>⑥</td> <td>촬영계획서</td> </tr> </table>	①	창작자 이력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	④	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	②	참여구성원 리스트	⑤	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	③	예산내역서	⑥	촬영계획서	
①	창작자 이력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	④	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										
②	참여구성원 리스트	⑤	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										
③	예산내역서	⑥	촬영계획서										

□ 주민등록초본 발급 참고사항

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. ^

본인     다른 세대 구성원

---

발급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. ^

발급     선택발급

---

표시할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. ^

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
 전체 포함     직접입력 : 최근  년 포함 (예, 최근 5년 포함)  
 세대주 성명/관계     발생일/신고일     변동사유

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

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병역사항

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
□ 지급조건 및 지원금 사용범위

가. 지급조건

▪ 제출서류

- 1) 매칭기관(지자체, 지역 영상위원회 등)의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자료 또는 지원금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차년도 지원금 지급 확정은 불인정, 실제 지원금 지급 미진행시 선정취소(지역영화 약정 후 2개월 이내))
- 2) 기타 필요로 요청하는 서류(착수보고서,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등)

▪ 지원금 집행 및 정산

-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‘e나라도움’ 을 통해 집행, 관리하여야 함(모든 지원부문은 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집행이 원칙이며, 시스템 사용 교육 참석은 필수임. 단 교육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자 담당자에게 교육방식 등 세부사항 개별통보 예정)

▪ 약정기간

- 1) 약정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(지원금 집행마감 2023.11.30./지원금정산 및 보고서제출 2023.12.31.까지 완료하여야 함)
- 2) 제작연장 : 1회에 한하여 장편 극영화 3개월, 다큐멘터리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. 연장 시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(지원금 사용연장은 불가능, 제작연장만 가능 /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단편은 연장 불가능)

▪ [지원자] 정산서류 제출

- 1) 기획개발 : 초고 이상의 시나리오, ‘e나라도움’ 정산완료(결과 및 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자료 업로드)
- 2) 제작지원 : 완성작 동영상 파일(크레딧에 지원기관 및 지원사실 명시), ‘e나라도움’ 정산완료(결과 및 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자료, 전체촬영일정표 업로드), 회계검토보고서(지원금 2천만원이상 해당)

▪ [매칭기관] 정산서류 제출

1) 매칭지원금이 최종 완료되었다는 내용 공문 및 정산서류 1부 (예산매칭기관 사업담당자가 동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 제출)

\* 예산매칭기관 사업담당자가 동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 제출

※ 2023년 12월 내 매칭지원금 정산완료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, 사유 및 제출가능 기한을 포함한 공문으로 대체

나. 지원금 사용범위

구분	기획개발	제작지원
사용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비(차량)수리 및 장비구입(예. 카메라/렌트카 등)</li> <li>- 자가시설 이용료</li> <li>-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</li> <li>- 홍보비, 사우나</li> <li>- 주류(호프, 이자까야, 술집 등) 유흥업소</li> <li>- 통신비(휴대폰 요금, 사무실 전화요금)</li> <li>- 기타 기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</li> <li>- 간이영수증/현금영수증 불인정/사후환급(정산) 금지</li> <li>- 해외결제 금지, 외장하드 구매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비(차량)수리 및 장비구입(예. 카메라/렌트카 등)</li> <li>- 자가시설 이용료</li> <li>-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</li> <li>- 주류(호프, 이자까야, 술집 등) 유흥업소</li> <li>- 사우나</li> <li>- 통신비(휴대폰 요금, 사무실 전화요금)</li> <li>- 기타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</li> <li>- 간이영수증/현금영수증 불인정/사후환급(정산) 금지</li> <li>- 해외결제 금지</li> </ul>
사용가능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참여인력 인건비 및 원천세액(의무사항),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(선택사항)</li> <li>- 회의비(회의록, 인터뷰 내용 첨부)</li> <li>- 자료수집(지문확인서, 구매계획서 및 목록 첨부)</li> <li>- 도서자료구입(자료에 맞는 도서 및 DVD) (※ 연극, 영화, 뮤지컬 관람불가)</li> <li>- 교통비 및 유튜브(장소답사, 지방취재, 자료수집 등 관련업무)</li> <li>- 복사, 인쇄, 문구류 구매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태프 인건비 및 원천세액(의무사항), 예술인 고용 보험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(선택사항)</li> <li>- 촬영 재료비, 장비/미술/소품/의상/분장 등 대여비</li> <li>- 숙박비, 식비, 부식비 등</li> <li>- 편집, 녹음, CG, 색보정, 자막 등</li> <li>- 교통비 및 유튜브, 주차비, 자동차 렌탈비 등</li> <li>- 복사, 인쇄, 문구류 구매 등</li> <li>- 총 30만원 이하의 이동식저장매체 구매(외장하드 등)</li> <li>- 회계감사비용(지원금 2천만원 이상 작품에 해당)</li> </ul>

▪ 지원금 인건비 집행비율

- 기획개발 : 80% / 제작지원 : 단편, 장편 다큐 최대 80%, 장편 극영화 최대 60%

- 필수조건 : 인건비 집행 시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

※ 시급(1시간 기준) : 2023년 9,62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: 2,010,580원

다. 지원금 지급방식 및 정산방식

▪ 지원금 지급방식 (※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시 하단 파일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함)

공통사항
<p>※ e나라도움 시스템 예탁계좌에 지원금 교부</p> <p>※ 지원대상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금 집행 (사업자로 신청시, 계좌이체로만 집행가능)</p> <p>[지원금 지급 횟수]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단편 : 지원금 일시불 지급 제작지원 장편 : 지원금 2,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2회에 나누어서 지급(1회 50%, 2회 50%)</p> <p>[회계검사] 지원금 2,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안내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검사를 받아야 함</p>

[약정체결]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3차 체결(한영위-지원작-매칭기관)		
[중간보고서 제출] 한국영상위에서 별도로 요청 시, 제출기한 내 제출. 단, 제작지원 장편 중 지원금 2,000만원 이상인 작품은 2차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중간보고서 제출하여야 함		
구분	기획개발	제작지원
제출 서류	[개인 신청] - 착수보고서(계획서 및 예산서 등) - [매칭기관] 지원금 지원확정 또는 입금내역 증빙자료 -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및 사업비 교부신청 -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확인서	[개인 신청인 경우] - 착수보고서(계획서 및 예산서, 최종 시나리오, 기획구성안 등) - [매칭기관] 지원금 입금내역 또는 지원확정 증빙자료 -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및 사업비 교부신청 -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확인서
		[사업자 신청인 경우] - 착수보고서(계획서 및 예산서, 최종 시나리오, 기획구성안 등) - [매칭기관] 지원금 입금내역 또는 지원확정 증빙자료 -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및 사업비 교부신청 -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확인서

▪ 지원금 정산방식

- 총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을 통해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, 결과 및 정산보고서, 지출 증빙자료, 전체촬영일정표, 회계검토보고서(지원금 2천만원이상 해당)는 모두 'e나라도움'에 업로드 하여야함. 결과물(시나리오, 영상물)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-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, 희망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회계법인에 인건비 원천세는 필수로 신고해야 하며, 원천징수 후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원칙임. 단,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공간 및 장비 등 대여 후 대여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나, 회계법인에 원천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함
- \* 증빙서류 :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, 계약서, 원천세 납부 영수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

#### 4.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

▪ 지원사업 중복접수 불가

- 신청일 현재 동사업에 지원받는 중 이거나,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(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,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등)에 진행 중인 작품 제외(※ 결과물, 정산자료 제출 및 반환금 상환까지 완료되고, 사업담당자로부터 사업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지원가능/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작품담당자에 해당됨)
- 동일한 작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개발 또는 제작지원(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,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)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은 동일항목 지원부문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(※ 예. 2017년 작품명 '△△' 으로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, 동일한 작품 '△△' 으로 2022년 한국영상위원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에 동일항목인 기획개발 부문 지원 불가)
- 신청일 현재 동사업의 정산은 완료하였으나 매칭기관의 지원금 집행 및 영상물 제작연장으로 매칭금에 대한 정산보고가 한국영상위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, 사업종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해연도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
- 신청일 현재 동사업의 정산은 완료하였으나, 영상물 제작연장 신청 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(사)는 사업종료로 인정되지 않으며, 당해 연도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

- 신청일 현재 동사업의 최종 사업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작품으로 당해연도 사업신청 할 경우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
- 지역영화 지원조건에 부적합하거나,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
- 1인(사) 당, 모든 지원부문에 총 1작품만 접수가능(※ 동일한 신청자(사)에 의해 2개 이상 접수 시, 접수작품 전체 제외)
- 국고 및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작품 제외
- 영화진흥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(대표), 배급사(대표), 감독, 개인은 접수 불가
-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(대표), 배급사(대표), 개인, 감독은 지원접수 시작일 이전 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 후 접수 가능
- 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> 제3조의8에 의거, 동 사업에 신청하는 제작사 또는 영화단체가 영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제3조의4에 의거 근로계약 체결 시,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심사 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매칭기관(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단체)에서 접수한 작품 중 당해연도 매칭금(지원금)교부가 아닌 차년도 지원금 교부건은 동 사업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자(사)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행 또는 치료감호 선고받은(성폭력범죄자) 경우 심사에서 제외
- 신청자(사)가 성폭력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
- ※ 지원대상 작품으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,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작품에 대한 지원결정 취소 및 보조금을 회수하며,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※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히,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요망

## 5. 지원금 취소 및 환수

-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
  -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  -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 - 지원금 교부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(착수보고서 미제출 등)
  - 약정체결 이후 약정체결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(결과 및 정산보고서, 결과물 미제출 등)
  - 동사업의 지원금 외 타기관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중복 수급한 경우
  - 시나리오 기획개발 또는 영화 제작을 중도 포기한 경우
  -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로 사업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
  - 지원대상자의 저작권 및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된 경우
  - 예산매칭기관으로부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
  - 지원대상자가 지역영화 지원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
  -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행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거나, 성폭력 수사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추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



-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(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,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)를 위반한 경우
-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
 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,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반환을 명령할 수 있음.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 및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. 해당 조치에 대한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며, 문화부 자체 심의회에서 결정 후 통보예정
  - 제재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추후 한국영상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(적용대상 : 제재조치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및 업체, 개인이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인 경우)

## 6. 기타 의무사항

### □ 기획개발 및 제작 진행상황의 보고 등

- 기획개발 및 제작 진행에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,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 당초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4조(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) “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” 지원대상자의 휴폐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신용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며,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함
- 위원회는 기획개발 및 제작상황을 점검하고,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(경우에 따라 제3자에게 의뢰)할 수 있음

### □ 지원대상자의 성범죄 예방 의무

- 신청대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, 성희롱·성범죄 사실확인서(소정양식)를 제출하여야 함
- 신청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거나, 성폭력 관련 수사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추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작품으로 선정되어도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후 제작참여자 전원이 “성범죄·성희롱 예방교육”을 수강하여야 하며, 기획개발 및 제작기간 중 성범죄·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, 감독을 다짐하는 서약서(소정양식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### □ 아동청소년 인권보호의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,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별도로 배려를 하여야 하며,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(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,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)를 위반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
### □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관리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영화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,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함. 경우에 따라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,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

□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
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근거하여,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또는 한국영상위원회가 별도 양식을 만들어 자료를 요청할 때,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지원대상자는 완성된 작품에 위원회의 지원사실을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



- 향후,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홍보 및 연구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있음

□ 정보공시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근거하여, 총 지원금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차기년도 4월까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에 공시하여야 함

□ 문의처 : <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> 사업담당자 E-mail) jenny@kfcin.or.kr